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급규정에 요금감면 포함 의무화 및 직권신청 근거 마련 〉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67호)

2024.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7
1.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	7
2. 시·도별 도시가스 공급규정(요금감면 관련)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원이의원 등 16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21.
3. 회부연월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 보편적 공급 및 요금감면 규정이 부재하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에 따라 운용되고 있음.

그런데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감면 서비스는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해당 당사자 본인이 요금감면 서비스의 대상자임을 알지 못하여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감면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직권으로 요금감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감면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하고, 서비스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가스도매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금감면 서비스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¹⁾(안 제20조의 3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0조의3(도시가스요금의 감면)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급규정에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스도매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요금감면 서비스의 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감면 서비스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개정안과 유사하게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에 대한 요금감면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기관 등이 직권으로 요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의안번호 제2109086호·제2119862호·제2124169호)이 제21대국회에 발의되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23.11.29.)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3.11.30.)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현행법상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정부는 내부지침(「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근거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²⁾.

동 지침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에너지이용권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여 대상별·용도별·계절별로 경감액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2023년 경우 약 175만 가구에 총 5,129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됨³⁾.

한편,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도시가스사업자⁴⁾가 도시가스 요금이나 그 밖의 안전관리, 공사비 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은 현행법 제20조제2항⁵⁾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정하고 있음.

2)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부지침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 외에 사회복지시설, 특별재난지역(자연재난)에 대해서도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를 시행 중이며, 2023년 기준 총지원액은 약 5,351억 원(사회복지시설 소매 지원금액 미포함)임.

3)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참고자료 1) 참고

4)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정의)

2. “도시가스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를 말한다.

5)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공급규정)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 시·도별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살펴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감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⁶⁾.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먼저,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요금감면 대상(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층)은 현행 정부 지침상의 경감대상과 유사하고⁷⁾, 시·도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이미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에 따른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으나, 현재 정부 지침으로 시행 중인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감면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요금감면 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6) 시·도별 도시가스 공급규정 중 요금감면 규정 현황(참고자료 2)

7) 단, 현행 지침상 경감대상에 ‘기초연금수급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요금감면 사항을 의무규정으로 규정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임의 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대상자의 범위, 방법 등은 정책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위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음으로,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금감면 서비스 직권신청에 관하여 살펴보면,

정부 지침상 신규감면은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⁸⁾, 사회적 취약계층이 관련 정보 부족 등의 사유로 요금감면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서비스 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이에 개정안은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를 대신 하여 직권으로 요금감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복지할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의 적극적인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한 취지로 보임.

다만,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금감면을 직권으로 신

8)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제4조(경감신청) ① 이 지침에 따라 신규로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으려는 자는 별지1 및 2의 서식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회적 취약계층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불가피하고 당사자의 수용성⁹⁾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문 의 처
02)6788-5457

9) 민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사회적배려대상자임이 밝혀지는 것을 반대하는 사용자도 있을 수 있음.

※ 참고자료

1.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

- ☐ (개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 주택용으로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 관련규정 : 산업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장애 1~3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차상위계층

- ☐ (지원금액) 계층별 월정액 지원

대 상		동절기 (12~3월)		그 외 (4~11월)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	86,000원	148,000원	9,900
	주거	86,000원	148,000원	4,950
	교육	86,000원	148,000원	2,470
차상위 계층		148,000원		4,950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72,000원		9,900
다자녀 가구,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18,000원		2,470

- ☐ (지원실적)

구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총지원액(억원)	936	996	1,027	1,122	1,188	1,296	1,393	1,514	1,632	5,129
지원가구(만가구)	87	93	104	116	127	136	150	161	162	175

* 지원액은 도·소매기준 금액

○ (요금경감액) 동절기 지원금액 확대 따라 '22년 대비 '23년 지원금액 상승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 시·도별 도시가스 공급규정(요금감면 관련)

시·도	요금감면 관련 규정
서울	제21조의2 (요금의 감면) 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금 감면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른다. ②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감면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에 따른다. ③ 공익상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법 또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다.
경기	제21조(요금) ⑥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경감 수준은 경기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당사가 적용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릅니다. ⑦ 사회복지시설용 요금 적용에 대한 운영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따릅니다. 제23조(요금의 수납) ⑤ 공익상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법 또는 규정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침이 있을 때에는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인천	제19조(요금) ⑥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금 감면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릅니다. ⑦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감면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릅니다. 제20조(요금의 수납) ⑥ 공익상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법 또는 규정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침이 있을 때에는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부산	제27조(도시가스 요금경감) 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금 감면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도시가스 요금경감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 1일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②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감면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신청한 날의 다음 날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③ 공익상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법령 또는 규정이 있을 시 해당 수요가의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다.
대구	제18조(요금) ⑥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금 감면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릅니다. ⑦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감면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릅니다. 제20조(요금의 수납) ⑥ 공익상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법 또는 규정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침이 있을 때에는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시·도	요금감면 관련 규정
광주	제21조(요금의 수납) ⑥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경감지침”에 따릅니다.(개정 2014.11.28.) ⑦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릅니다.(개정 2014.11.28.) ⑧ 공익상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법 또는 규정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침이 있을 때에는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2.06.25.)
대전	제20조(요금의 수납) 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경감지침”에 따른다. ⑥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에 따른다. ⑦ 공익상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법 또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다
울산	제20조(요금의 수납) ⑥ 공익상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법 또는 규정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침이 있을 때에는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요금의 납기와 수납방법) 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릅니다. ⑥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에 따릅니다.
세종	제39조(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요금경감) ① 회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신고한 시설 중 별표4에 정한 시설로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경감액을 차감하여 요금을 부과합니다. ② 회사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하는 평상요금과 산업체에 적용하는 산업용 요금과의 1MJ당 단가차액에 당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한 도시가스사용량을 곱한 금액을 경감액으로 합니다.(2020. 12. 1. 개정) ③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신고한 일의 익일 사용량부터 적용합니다. 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해 지정된 감염병 전담기관의 지정일이 한 달 이내인 경우 지정일의 익일부터 지정해제 일까지를 일할 계산하여 경감합니다.(2020. 12. 1. 개정) ④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가스계량기를 타 수요자의 가스계량기와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스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가스사용량 추정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관련된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의 건축물의 총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차지하는 용적률 산정용 면적의 비율에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의 도시가스 사용량을 곱하는 방법(2020. 12. 1. 개정) 2.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의 총관리비에서 사회복지시설이 부담하는 관리비의 비율에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의 도시가스 총사용량을 곱하는 방법 ⑤ 회사는 가스계량기가 구분하여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가스사용량 확정이 곤란한 경우에

시·도	요금감면 관련 규정
	는 일반적인 요금청구절차에 따라 요금을 청구하고, 가스사용량이 확정되는 달의 다음달에 경감액 만큼을 경감 또는 환급하며, 그 외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요금 감면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릅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가스사용자 중 별표5의 사회적배려대상자에 해당하여 가스요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에 대한 적용대상, 경감수준 및 경감방법, 경감액 처리 등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시행합니다.
강원	제20조(요금의 수납) ⑥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의「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경감지침」에 따릅니다. ⑦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의“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릅니다. ⑧ 공익상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법 또는 규정과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침이 있을 때에는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정수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충북	제21조 (가스요금의 경감) ①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요금 감면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릅니다. ②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감면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릅니다. ③ 공익상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법 또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정수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충남	제39조(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요금경감) ① 회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시설 중 [별표4]에 정한 시설로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제2항에 의한 경감액을 차감하여 요금을 부과합니다. ② 회사는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평상요금과 산업체에 적용하는 산업용 요금과의 1MJ당 단가차액에 당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한 도시가스사용량을 곱한 금액을 경감액으로 합니다. ③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요금 경감은 신청일의 다음날부터 적용합니다. 단, 신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경감요청 신청일의 다음날까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수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사회복지시설 신고서 수리일부터 적용합니다.(2020. 12. 2. 개정) ④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가스계량기를 타 수요자의 가스계량기와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스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가스사용량 추정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관련된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의 총면적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에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의 도시가스 사용량을 곱하는 방법 2. 사회복지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의 총관리비에서 사회복지시설이 부담하는 관리비의 비율에 사회복지시설이

시·도	요금감면 관련 규정
	입주한 건축물의 도시가스 총사용량을 곱하는 방법 ⑤ 회사는 가스계량기가 구분하여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가스사용량 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요금청구 절차에 따라 요금을 청구하고, 가스사용량이 확정되는 달의 다음 달에 경감액 만금을 경감 또는 환급합니다. ⑥ 회사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신청일의 다음날부터 요금을 경감하며, [별표5]에 의한 대상자에게 [별표6]의 경감금액을 적용합니다. 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합니다.
전북	제20조(요금의 수납) ⑥ 공익상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법 또는 규정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침이 있을 때에는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정수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제34조(가스요금의 경감)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의 가스요금 경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시행합니다.
전남	제20조(요금의 수납) ⑥ 공익상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법 또는 규정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이 있을 때에는 사용료 및 그 밖의 제 정수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별표 7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적용한다. 2. 별표 8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적용한다.
경북	제21조(요금의 수납) ⑥ 공익상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법 또는 규정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침이 있을 때에는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정수금을 감면 또는 경감합니다. 제27조(요금경감)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을 위한 신청 및 적용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가스요금을 경감 받으려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사회적배려대상자는 별지 제6호 또는 제7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신청한 날의 다음 날 사용량부터 적용하며,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 1일 사용량부터 적용합니다. 3.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가 발생 시 회사는 행정안전부 또는 시·군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수령하여 경감대상자의 감면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필요한 정보를 수령한 날이 속한 달에 적용하나 당월 요금경감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달에 경감하며, 그 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에 따른다.
경남	제19조(가스요금 용도구분) 14.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다음의 지침에 따릅니다. 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제20조(요금의 수납) ⑥ 공익상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법 또는 규정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침이 있을 때에는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정수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시·도	요금감면 관련 규정
제주	제22조(요금 등의 수납) ⑥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의“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경감지침”에 따릅니다. ⑦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의“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릅니다. ⑧ 당사는 공익상 또는 기타의 사유로 특정 가스사용자에 대해 요금 등의 징수금 또는 제6조의 시설분담금 등의 부과를 일부 경감 혹은 유예·감면할 수 있습니다.

자료: 한국도시가스협회